

2024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방문요양)

제 1 조 (계약 목적)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도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1.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2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3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4.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5. 센터와 수급자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계약기간)

1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2.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.
3.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4. 제 1 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. <개정 2018.00.00.>
 - 1)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
 - 2)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5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00.00.>

제 3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1. 장기요양 인정서,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,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(서비스)를 이용한다. (인지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안됨)
2. 1~4 등급 : 재가 및 시설급여 / 5 등급 : 치매등급 /인지등급
3.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(한도액)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2024 년 월 이용료(한도액)

등급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- 1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2)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 (1 회 방문당 산정기준)

분류번호	분 류	금 액(원)
가-1	30 분 이상	16,630 원
가-2	60 분 이상	24,120 원
가-3	90 분 이상	32,510 원
가-4	120 분 이상	41,380 원
가-5	150 분 이상	48,250 원
가-6	180 분 이상	54,320 원
가-7	210 분 이상	60,530 원
가-8	240 분 이상	66,770 원
심야가산	22 시 이후 06 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를 가산할 수 있다.	
휴일가산(일요일)	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할 수 있다.	
유급휴일 (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)	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를 가산할 수 있다.	

- 1)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 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.
- 2) 1 회 방문 당 240 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“가-8”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- 3) 1 일 3 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방문간격이 2 시간 미만 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 회로 산정한다.
- 4)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.

제 4 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1.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
3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

제 5 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제 6 조 (계약해지)

1.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 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.
2.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3)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4)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7)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